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2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5. 1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3. 5. 25.

다. 상정일자: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6. 15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구민안전과장 전미경】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의 개정에 따른 변경 규정을 반영하고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4조, 제5조)
 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제3항 삭제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
- 사용 표현 순화(안 제2조)
- 상위법 당연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삭제(안 제6조)

다. 참고사항

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(개정)
- 입법예고: 2023. 4. 13. ~ 5. 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의 개정에 따른 변경 규정을 반영하고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는
(안 제2조)에는 사용 표현 순화하는 내용과 (안 제6조)상위법 당연 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삭제하고, (안 제4조, 제5조)에는 “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으로”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(재정)

-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③ 삭제 <2016. 5. 29.>